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동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일  
한국방재협회장

### 1. 신청인

법인명	한국기후기술(주) (대표 김영만)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20111-*****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2번길 7 (안양동) 3층

### 2. 기술명 : 도시 물순환을 위한 저영향개발 침투도랑 제조기술

###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도로 경계석에 유입구 설치하여 전처리시설을 적용하고 강우유출수를 침지하여 침투도랑으로 유출 시켜 흡착·침전·침투 등 물질순환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제거 및 도로 침수·홍수 저감 등 자연재해를 저감 할 수 있는 물 순환 기술 저영향개발 침투도랑(Infiltration ditch)의 기술이다.

### 4. 기술범위

- 도로 경계석에 우수유출수 유입구와 전처리시설을 적용하여 우수유출수를 침지하고 자연적인 물질 순환과정에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 제거 및 도로침수·홍수 저감 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 침투도랑 기술

5.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한 사항은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방재협회(02-6952-9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가. 이해관계인 의견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나. 이해관계인 서약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의 붙임1 서식)
- 다. 신청서 열람 요청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라. '가'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 자료

7. 제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02-6952-9388)

※ 이해관계인 의견 반려 사항

「재난안전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및 3항에 의거,

-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 인정되지 않음.
- 이해관계인의 기술이 타인의 기술로써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
- 기술 도용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 요청한 경우
-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